## 부동산 공법

## 기본이론 과정

교수: 이동휘 과정: 기본이론(8주차)

- 1.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이 도로(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)에 접하여야 한다.( )
- 2. 소요너비에 못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.( )
- 3.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에 있는 출입구, 창문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( )
- 4.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"건폐율"이라 한다.( )
- 5.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준에 따르나 건축법에 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( )
- 6.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적률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있다.( )
- 7.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()
- 8.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없다.( )
- 9.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1.5미터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.( )
- 10.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18미터인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8미터를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.( )
- 11.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채광(採光)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.( )
- 12. 건축협정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개별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.( )
- 13.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지만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 아니다.( )

- 14.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.( )
- 15.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은 국민주택이다.( )
- 16. 폭 8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( )
- 17. 보안등, 대문, 경비실, 자전거보관소, 공동작업장,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이다.( )
- 18. 간선시설이란 도로·상하수도·전기시설·가스시설·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 지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.( )
- 19.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.( )
- 20.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( )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( )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.
- 21. "도시형 생활주택"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.(</u>)
- 22. <u>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</u>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·조성되는 단독 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이다.

## ♣. 8주차- 정답 및 해설

- 1. (x)- 2미터 이상 2. (x)-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를 물러난 선 3. (0). 3미터는 4.5m 이하이므로 맞습니다. 4. (0) 5. (0) 6. (x)- 분할할 수 없다.
- 7. (0)- 지금 정도면 심의는 상식입니다.
- 8. (x)-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9. (0)
- 10. (x)- 높이의 2분의 1인 9미터를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.
- 11 (x)-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등 확보 높이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- 12. (0)- 눈치 13. (x)- 준주택이다. 14. (0) 15. (0)
- 16. (x)- 20미터 이상 17. (x)- 공동작업장,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이다.
- 18. (0) 19. (x)- 3분의 1 20. (1/10). (1/3) 21. (0) 22. (x)